

# 서울교육대학교 · 국립현대미술관

## ‘교사·학생의 미술관교육’을 위한 협약

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‘서울교대’라 한다)와 국립현대미술관(이하 ‘미술관’이라 한다)은 당사자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, 상호 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서울교대와 미술관은 공교육과 미술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모색하고, 청소년 및 교사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서울교대와 미술관은 다음에 각 호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 단, 제반 업무협력을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, 사안별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.

1. 청소년(초·중·고)대상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지원
2. 예비교사 대상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
3. 교사대상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
4. 양 기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교육 분야 사업의 상호 연계 추진

**제3조(비밀유지)**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각종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.

**제4조(협약의 해지)**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타)**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**제6조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**

- ① 이 약정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②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이 약정의 증명을 위해 약정서를 2부 작성,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4월 19일



총장 송 광 용

송 광 용



관장 배 순 훈

배 순 훈